

박종주. 2019. “낙태죄(1953-2019), 그리고 그 이후의 세계” 『인권연구』 2(1): 183-206.

Park, Jongju. 2019. “World Beyond the Anti-Abortion Law(1953-2019, South Korea)”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2(1): 183-206.

[현장논단]

낙태죄(1953-2019), 그리고 그 이후의 세계

박종주*

1953년 국회, “낙태죄를 갖다가 말살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간통죄를 인정한 그 정신에 배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곽의영 의원, 2대 임시국회 제16회 제17차)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은 1953년 9월 18일자로 제정된 법률 제 293호, 즉 제정형법 제 27장 “낙태의 죄”의 첫 문장 — 제 269조 제 1항 — 이다. 이 조항으로 시작하는 형법 낙태죄 규정은 1953년에 제정된 이후 1995년의 벌금 단위 및 치상·치사 등의 용어 개정을 제외하면 아무런 변화 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1953년 3월 법전편찬위원회가 작성한 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금 수정한 것이 법전에 올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만으로도 66년 이상을 버티고 있는 셈이다.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자기낙태죄를 규정한 269조 1항과 207조 1항 중 의사의 낙태죄를 규정한 부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유효하게 된 것이, 형법 낙태죄가 맞이한 최초의 변화다.

제정형법안은 1953년 4월에 첫 독회에 회부되었다. 법전편찬위원회를 대표해 참석한 대법원장, 국회 부의장, 법제사법위원들 등이 초안

* 성과재생산포럼.

및 수정안을 작성한 논의 과정이나 앞으로의 논의 진행에 대한 발언들을 한 후 처음으로 입을 연 변진갑 의원은 논쟁적인 지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중 하나로 낙태죄 조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세계가 산아조절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논의되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낙태죄를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가문의 수치 운운하고 불의의 출생이라고 해서 영아를 살해하는 것을 성형(成刑)하는 각 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지나친 봉건적인 것이 아닌가 하고 나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부녀 보호에 대한 조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녀는 또 같은 입장에서 처우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부녀에 대한 조치 특히 임부, 애기 벤 여자에 대한 조치가 하나도 없습니다¹⁾(2대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5회 제55차 회의록, 1953.4.16.:39).”

이처럼 식민지 조선에 적용되었던 일본 형법의 낙태죄 규정을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면서²⁾ 한편으로는 “가문의 치욕을 은폐”

1) 이 중 영아살해에 대한 언급은 “직계존속이 가문의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한[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민련한[딱하고 가여운]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안 제 268조에 대한 것인데, 여기서 “성형(成刑)”은 “감형(減刑)”의 오자로 보인다(인용한 것은 후에 전자화한 회의록으로, 원문에는 독음 없이 한자만이 적혀 있다). 잘 알려져 있듯 한국의 형법은 제정 이후 지금까지 다른 살해에 비해 존속살해에는 더 무거운 형을, 비속영아살해에는 더 가벼운 형을 규정하고 있다.

2) 일제 형법 적용 이전의 조선에서는 자기낙태는 죄가 아니었으며 타인을 낙태하게 만드는 행위만이 상행의 일종으로서 범죄로 규정되었다. “일본의 경우, 일본 메이지 정부가 1868년 부국강병 등의 이유로 산과의 약물 판매와 낙태를 금지하는 법령을 공포하고, 1880년(메이지 13년)의 구 형법과 1907년(메이지 40년)의 현행 형법에서 ‘낙태죄’를 제정”했으며 1949년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를 허용하기 시작하고 내각에 인구위원회를 설치했다. 한편 1952년에는 국제가족계획연맹(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IPPF)과 인구위원회(Population Council)가 출범해 세계 단위의 인구 운동이

하기 위한 비속 살해를 정당화하고 임신한 여성의 권리는 모른 채하는 형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그는 몇 달 뒤 7월 낙태죄 조항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회의에서 삭제를 제안한다(2대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 16회 제17차 회의록, 1953.7.6.:6-8). 이에 이 자리에서는 “오늘에 처해 있는 사회적 현실은 도저히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그 인구를 하등의 포용해 줄 수 없는 이런 환경”이므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영완 의원, 위 회의록: 9)거나 애초에 낙태 건수가 많지 않고 신경 써야 할 다른 범죄도 많은 상황에서 굳이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그 당사자나 혹은 의사나 산파를 약간 괴롭게 하는 사실이 있고, 또 형사들은 돈 버리감이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든다(법제사법위원장대리 엄상섭 의원, 위 회의록: 11)는 등 낙태죄 조항의 문제를 인정하는 의견이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인격을 전연 무시하는 공산국가만이 이 낙태죄를 부인하는 것”이며 “우리나라가 이렇게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을], 또는 공산주의에 가까운 법을 실현한다고 해서 자유주의국가에서는 대단히 실망치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다(이용설 의원, 위 회의록: 13)는, 혹은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는” 것이라는(김용화 의원, 위 회의록: 14) 등의 삭제 반대 의견 또한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 낙태죄 규정은 통과되었다. 변진갑 의원의 삭제 제안은 재석 107인 중 가 27표에 부 0표,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고 연이어 의장대리 조봉암 의원이 “원안은 복잡한 까닭에” 다시 한 번 진행한 삭제 투표 역시 가 23표에 부 2표, 과반수 미달로 부결된다(위 회의록: 15-18). 마지막으로 논의된 것이 원안에 부동의낙태 관련 조항을 추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며, 이것이 투표 없이 (“이의 없소”라는 발언과 함께) 통과되어 법전에 오르게 되었다. 사실상 토론이랄 것 없이 서로 다른 층위에서

본격화되었다(류민희, 2018: 152-159).

점점 없이 말을 주고받은 끝에,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엄상섭 의원 스스로가 “개인적 생활이나 명예상의 지중한 영향을 물리치면서도 국가적이나 민족적 입장에서 그것을 길러서 이렇게 강요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을 가졌으며 결과적으로 “그다지 큰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 초안에다 존치시켰든”(위 회의록:9) 형법상 낙태죄는 이처럼 사실상 이전에 의용(依用)해 오던 일본형법에 해당 조항이 있었던 관성으로 인해 제정에 이른 셈이다³⁾. 그러나 적극적인 삭제 반대 의사 표명조차 거의 없었던 상황이라고는 해도, 회의에서 논의된 것들이 낙태죄 조항의 토대를 이룸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존 인구의 삶의 질이나 사실상 피임 수단이 전무한 상태에서 낙태를 금지한 후 뜻하지 않게 태어나게 될 인구의 삶의 질, 무리한 임신출산(의 반복)으로 건강상의 위협에 처하게 될 임산부의 안전, 원치 않는 출산을 한 후의 여성의 삶의 질에 대한 의견들보다⁴⁾ 태아생명의 존엄성이나 자유주의 수호를 주장하는 의견들이 더 설득력을 가진 셈이니 말이다.

앞에서 인용한 “개인의 인격”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내세운 발언 이외에도 유의해야 할 —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 말들이 있다. 변

3) 엄상섭 의원은 앞서 언급한 형법안 첫 독회(제15회 제55차 회의, 회의록 40쪽)에서 형법 제정에 있어 일본 법 의용 문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다. “이 형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 그 민족의 전통이라든지 습관을 떠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지도정신을 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가장 봉건적이든 그 시대에서 왜놈의 압정(壓政)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선성이나 악성이 모두 제대로 자라지 못했는데 지금 갑자기 민주사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도된 형법에 그 시대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민주주의적인 그런 순수한 입장으로 보면 역시 혼잡한 무엇이 있고 우리 국민의 전통적인 사상이나 습관으로 보면 너무나 지나친 점이 있다는 것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4) 앞에서부터, 제2대 제16회 제17차 국회임시회의속기록, 1953년 7월 6일, 9-10쪽(고영완 의원), 10쪽(김준태 의원), 12쪽(정남국 의원) 등 참고.

진갑 의원의 삭제 제안에 다른 의원이 인구 현황을 언급하자 임상섭 의원은 이에 답하여 “국가의 그때그때[인구상황]에 따라서 조절은 단행법으로라도 만들기로 하고 우선 이런 정도의 조문만은 존치해 좋고 국회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법전편찬위원회의 “지배적인 의견”을 전한다(위 회의록: 9). 또한 곽의영 의원은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낙태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은 허위의 사실로 인정 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 후) 독신 여성의 임신 이후 생활에 대한 우려로 낙태죄를 삭제하는 것은 “간통죄를 인정한 그 정신에 배치가 된다”고 주장하며(위 회의록: 11) 이용설 의원은 “이 낙태죄를 부인한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재래에 우리나라에 있던 그 도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는지 여러분께서 깊이 생각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한다(위 회의록: 13). 한편 박순천 의원은 다산의 위험 등을 거론하며 낙태죄 조항 삭제에 기본적인 동의를 밝히면서도 “문란된 풍기라든지, 성도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것은 새 나라의, 새 국민의 풍기와 모든 보건을 위해서 나는 반드시 우리가 법의 제재를 받으면서 국민을 다스려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이 원안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다(위 회의록: 14).

1973년 비상국무회의,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인구 관리를, 한편으로는 “문란된 풍기”를 논점으로 삼으며 법전에 오른 형법 낙태죄 규정은 역설적이게도 정부에 의해 무력화된다. 형법 제정 이전부터 국제 사회는 가족계획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음에도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낙태죄를 유지하고 가족계획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았지만, (통일을 사실상 포기한) 박

정희 정권이 남한 단독의 경제 성장과 자본주의 정착을 위해 전면적으로 인구 통제에 나서게 된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60년대부터 인구 증가율 감소를 목표로 가족계획 운동을 펼치고 이민정책을 추진했다. 1973년에는 비상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을 제정하는데, 제8조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가 규정된다. 의사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다섯 가지 경우 중 마지막으로 제시된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조항은 정권이 인구정책 차원에서 던진 “낙태 자유화의 신호”였다(류민희, 2018: 160)⁵⁾.

그러나 이러한 무력화는 오직 표면적으로만 역설적인 일이다. 애초에 낙태죄에 규정한 국회에서의 논의는 당사자 개개인들의 삶이 아니라 그것이 국가와 사회의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니 말이다. 처음부터 낙태죄는 그 자체로서의 죄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인구 증가를 토대로 한 ‘국력’ 강화나 가부장주의적 질서 유지라는 국가의 필요에 부응하지 않는 죄로서 규정된 것이었으므로, 국가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국가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죄가 아니게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모자보건법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낙태를 판단 및 수행하는 주체로 임신한 여성 자신이 아닌 의사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 정권이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강제적 수단들을 동원해 가며 피임과 임신중절을 획책했던 것⁶⁾ 등에서 알 수 있듯 이 시기에도 여전히 임신이나 출산,

5) 또한 류민희는 배은경을 참조해 정책사업과 입법을 통해 펼쳐진 일련의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한국의 가족계획과 인구정책의 진행 과정에서 여성은 생식능력 통제의 선택지가 넓어졌고, 이를 자신의 욕구에 따라 활용하려는 여성의 자율성과 행위성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낙태의 범죄화는 여전히 여성의 재생산 경험을 비가시화하는 측면이 있었다(2018: 160-161).”

낙태는 개개인의 삶에 대한 고려 없이 국가의 필요에 입각해서만 사유되었다.

‘허용 사유’의 첫 번째로 제시되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라는 항목은⁶⁾ 국가의 이러한 관점을 결정적으로 드러낸다. 황지성이 지적하듯 “유신 시기 산아조절 시도는 흔히 출산의 양적 측면의 감소 노력으로만 상상되지만, 인구의 양적 감소만큼 중요했던 것은 강력한 경제 발전과 근대화라는 미명 아래 ‘생산성’ 있는 인구를 유지·증가시키는 것이었다”(황지성, 2018: 222)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모자보건법은 여기에 더해 “의사가 환자를 진단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환에 이환된 것을 확인하고 그 질환의 유전 또는

6) 1967년 조사에 따르면 1963-1966년 IUD 최초 삽입자 중 42%가 부작용을 호소했고 54%가 제거나 자연배출을 경험했다(김태룡, 『전국 자궁내장치 피임 보고』, 보건사회부; 인구정책 50년사 편찬위원회(2016)에서 재인용). 또한 고경심은 이 시기에 정부 지원으로 시행된 임신 초기 낙태가 “월경조절술”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짐으로써 “단순히 월경을 나오게 조절해주는 간단한 시술처럼 오인”되었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고경심, 『낙태와 여성 건강권 (2) - 한국의 낙태 실태』, 《건강미디어》 2018년 9월 10일자 기사. <http://www.media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7>. 이곳을 포함해 이하에서 모든 웹페이지는 2019년 5월 3일 최종 확인.).

강제 시술에 대한 증언으로는 홍미영, 『‘적게 낳아 잘 기르자’ 시대의 반강제 불임수술』 등을 참고할 수 있다(<https://blog.naver.com/myhong0910/221283307370>).

7) 이 항목은 단순한 문구 수정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1973년 당시의 대통령령은 해당 장애·질환으로 “유전성 정신분열증/유전성 조울증/유전성 간질증/유전성 정신박약/유전성 운동신경 원질환/혈우병/현저한 유전성 범죄경향이 있는 정신장애/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써 그 질환의 태아에 미치는 발생빈도가 10퍼센트 이상의 위험성이 있는 질환”을 규정했으며,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2018년 개정) 대통령령은 이를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불임수술을 행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불임수술대상자의 발견을 보고하여야”하며 “보건사회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환자에게 불임수술을 받도록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것이 개인의 “모자보건”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이른바 “공익상 필요”에 따른 것임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이 조항은 1999년 개정에 이르러서야 삭제되었는데, 실제로 정심원이라는 시설에서 1975년에 이에 의거해 불임수술 허가를 요청하는 일이 있었으며 당시 반대 여론을 의식한 보건사회부에서 허가를 내지 않았으나 결국 정심원은 수술을 강행했다. 이 법을 근거로 보건사회부의 “명령”을 거쳐 강제 불임수술이 행해진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지만, 직접 이 법을 통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의식은 사회적으로 팽배했다. 허용한계 조항과 마찬가지로 이 조항 역시 정책적 전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존의 통념을 명문화한 것인 셈이다. 제 15대 국회의 김홍신 의원은 1999년에 생활인들끼리 결혼한 사례가 있는 10개 정신지체장애인 시설 중 8개 시설에서 (2개 시설에서는 부모의 판단으로, 6개 시설에서는 시설의 판단으로) 총 75명에 대한 강제 불임수술을 행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한센인들은 2010년대 들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통해 국가 주도로 강제적인 불임 및 낙태 수술을 받아 왔음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⁸⁾.

이런 점들을 두고 생각한다면, 비록 ‘사실상 사문화’ 상태에 있어 왔다고는 해도 형법제 27장 “낙태의 죄”는 결코 그 힘을 잃은 적이

8) 여기 언급한 사례들을 포함해 수용시설에서 자행된 강제 불임·낙태 시술 등 재생산 통제에 대한 글로 앞에 언급한 황지성(2018)의 『건강한 국가와 우생학적 신체들』 및 같은 책에 수록된 조미경의 『수용시설에 갇힌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라.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겉으로는 태아 생명의 존엄성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여성의 삶을 무시하며 여성의 재생산 능력을 인구 정책의 수단으로 삼고 그 효용 강화를 위해 여성의 성적 실천 전반을 통제하려 드는 한국 사회와 국가의 이데올로기 ‘재생산 철학’을 상징하는 기제로서 낙태죄는 존재해 왔다. 형법 제27장은 단순히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여성은 국가(와 남성)의 소유이며 언제나 통제 가능한 사물이다’라는 선언으로서 법전에 올랐으며 정책 변화 속에서도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최근 낙태죄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준비하며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통상 임신은 남녀 성교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강간 등의 사유를 제외한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은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방종한 사람이라는 주장은 형법 낙태죄 규정의 바탕이 되는 인식을 드러낸다. 형법의 낙태죄 규정은 남성들이 이별이나 이혼의 국면에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여성의 낙태전력을 문제삼거나 고발하는 행위를 가능케 했고,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그러하듯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사익”으로 규정하며 “공익인 태아의 생명권”과 끊임없이 대립시켰다.

2017년 모낙페, “국가가 생명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가 폭력이기 때문에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기 한 달 여 전인 2019년 3월 8일, 111주년 세계여성의날과 낙태죄 위헌 결정 촉구 1인 시위 100일차를 맞아 기자회견을 연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페)은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⁹⁾. “1953년, 피임법도 제대로 없던 시절

부터”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는 “가족계획 정책을 통해 경제 개발을 목표로 때에는 안전하지 못한 피임 장치를 보급하고, 법적 근거와 상관없이 임신중절을 조장”하며 “특정 인구를 줄이거나, 늘리기 위해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방치하고 갈피 없는 역사를 써내려온” 대한민국의 “인권 침해의 역사”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들은 “우리는 차별도 허락도 거부한다”고, “우리는 더 이상 국가의 인구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안에서 인공임신중절 사유를 허락받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가가 낙태를 금지하고 여성을 차별할 권한은 물론 특정한 허용 사유를 정하고 여성의 상황이 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권한 또한 갖지 않는다는 이러한 주장이 대대적이고 공식적인 수준으로 표명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법적으로는 낙태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병원에서 소파술 등을 통해 낙태를 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낙태죄는 오랜 시간 한국에서 이렇다 할 논제가 되지 못했고, 따라서 이 법이 갖고 있는 문제나 그에 맞설 새로운 인식들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2010년 3월에 발족한 연대체인 ‘임신출산결정권을위한네트워크’(이하 임출넷)가 2010년 8월 「임신중지(낙태)권 요구안: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지 말라」」를 발표하며 “여성의 의사에 근거한 임신중지(낙태)를 허용할 것을 요구”한 것은 모낙페의 언어와 대비를 이룬다¹⁰⁾.

물론 이 요구안은 건강권,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포함하는 확장된 틀에서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2010년에 제기되었으며

9) 이 단락의 인용문은 모두 같은 글에서 가져 온 것이다. 전문은 <http://srhr.kr/2019/265> 등에 게시되어 있다.

10) 전문 및 보도자료가 http://hotline.or.kr/board_statement/10704 등에 게시되어 있다.

2012년에 4:4로 합헌 결정이 나온) 낙태죄 위헌 소송 국면에서는 임출넷 역시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의사에 근거한 낙태 시술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 270조 1항을 명백한 위헌 조항으로 판결해야 마땅하다”며 “처벌과 통제 대신 임신과 출산, 여성의 신체와 사회적 관계에 관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길” 필요성을 역설했다¹¹⁾. 그러나 임출넷의 입장은 생명권 대 자기결정권의 대립구도를 전면적으로 뒤집기보다는 “출산 직전까지 두 가지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두 가지를 단순히 대립으로 보거나 선택권이 생명권보다 사소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¹²⁾ 정도에 머물렀으며, 크게 보아 형법의 낙태죄 규정을 직접 다루는 대신 모자보건법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도입해 위법성 조각의 폭을 확장하는 방식을 논의의 중심에 두었다. 당시 위헌 소송이 합헌 결정으로 끝나고 임출넷 활동 역시 중단되면서 이렇다 할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고, 이것은 이후로도 한동안 사실상 ‘여성계’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이어졌다. 일례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13년에도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을 요구한 바 있다¹³⁾.

당시의 운동이 이렇게 전개된 것은 거칠게 말하자면 한국의 진보적 사회운동계 전체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여성운동계에서 또한 낙태죄

11) 2011년 11월 10일자 임출넷 기자회견문, 「낙태처벌은 명백한 위헌이다! 임신과 출산에 관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라!». 전문은 http://blog.jinbo.net/nga_sf/60

12) <https://justice2011.tistory.com/entry/낙태는-태아-생명권과-산모-선택권의-대립인가요/> 참고. 이 사이트에는 이 밖에도 임출넷에서 작성한 글 일부가 게시되어 있는데, 페이지에 표시된 게시일자와 실제 글이 작성 혹은 발표된 일자는 일치하지 않는다.

13) 임출넷의 입장 및 그로부터 더 나아가지 못한 여성운동계의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 이유림(2018: 42쪽 이하) 참조.

문제에 대한 이렇다 할 논의를 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프로라이프 진영’의 프레임에 말려 든 탓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까지 의식되지 않았던 낙태죄는 ‘진정으로산부인과를걱정하는의사들모임’(이하 진오비)이라는 작은 모임에서 2009년 말경 ‘낙태 근절’을 선언하며 낙태 시술 병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갑작스럽게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들의 고발에 더해 이명박 정권이 ‘저출산 문제’ 대책으로서 낙태 감소를 지목하고 실제로 처벌을 강화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일선 병의원 대다수가 낙태 시술을 중단했고 수술비는 폭등했다. 여성들은 병원을 찾지 못해 해외로 나가 시술을 받거나 겨우 찾아낸 병원에서 거액의 비용을 치르고 뒤늦은 시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그런 과정에서 브로커를 자처한 이들에게 사기를 당해 돈만 잃게 되거나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시술 중의 사고에 상급병원으로의 이송을 포함한 적절한 대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이도 있었다. 진오비는 그런 현실에 아랑곳 않고 프로라이프의사회를 발족하며 ‘태아의 생명권’을 내세워 공세를 펼쳤고 헌법재판소 등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운동계 역시 감히 그 틀을 벗어나는 주장을 해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모낙폐가 2017년 출범과 동시에 낙태 처벌을 “생명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가폭력”으로 규정하며 낙태죄 폐지 및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 전면 개정, 그리고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의 강화, 의료 접근권 보장, 혼인여부·성정체성·장애·질병·경제 상황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성적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한¹⁴⁾ 것은 다소 급작스러워 보일 것이다. 실제로 2016년 9월 보건복지부가 모자보건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낙태 시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며 자격정지 처분을 1개월에서 12개월로 상향하

14) 2017년 9월 28일자 모낙폐 발족 기자회견문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와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http://srhr.kr/2017/234>

는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맞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전면적 시술 중단을 선언하면서 낙태죄가 다시 한 번 전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된 과정부터가 꽤나 갑작스러운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입법예고 직후인 10월 성과재생산포럼이 제안한 공동성명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인공임신중절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하고, 형법 상의 ‘낙태죄’를 폐지하라!」에는 일주일 남짓만에 2개 연대체와 73개 단체, 3,800여 명의 개인이 연명했다. 이 성명 말미의 요구안은 이후 모낙폐가 출범과 함께 제시한 요구안과 다르지 않았다¹⁵⁾. 그러나 앞선 시기의 운동과 거의 단절이라고 해도 좋을 차이를 갖고 있는 이 성명에 이만한 수가 연명한 것, 그리고 임출넷을 구성했던 단체 상당수가 다시 모인 곳이기도 한 모낙폐가 변화한 입장으로 뜻을 모은 것은, 그저 빠른 대응을 위해 토론을 생략한 결과가 아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여성재생산권새로운패러다임만들기기획단’(이하 기획단)을 구성해 2015년 한 해 동안 연속포럼을 진행했고 이듬해에는 이 사업을 계기로 결성된 성과재생산포럼이 한 해 동안 장애여성공감과 공동으로 연속포럼을 열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여성운동은 물론 장애인운동, 성소수자운동, 청소년운동, 그리고 법조계와 학계, 의료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들 사이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논의가 진행되었기에 가능했던 전환과 합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획단이 여성운동계 및 장애운동계의 활동가들, 장애여성 자조모임

15) 공동성명 전문은 <http://srhr.kr/2016/156/>에 게시되어 있다. 한편 이 시기에는 한국여성민우회 역시 “여성들의 임신중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낙태죄’ 폐지를 위한 법개정 청원서명”을 전개했는데, 완결된 성명 등의 형태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또한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며 ‘낳을만한 생명’을 가르치는” 모자보건법에 대한 비판이나 “여성의 사회적, 성적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에 대한 요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18460>

구성원 등과 몇 차례 간담회를 진행한 후 마련한 종합토론회에서 나영정은 “공식적인 법제가 낙태를 형법으로 불법화하고, 국가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낙태에 대한 처벌의 예외를 두는 현재의 상황에서 임신과 임신중지의 문제는 ... 장애인의 사회적 위치를 정하고 정상신체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장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률에 대한 방향을 고민할 때 애초에 국가가 ‘임의로’ 정한 낙태허용 기준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허용기준을 낮설게 보고, 어떤 기준은 정당하며, 애초에 국가의 ‘허용’이 정당한지를 따져물어야” 함을 강조한다(나영정, 2015: 21)¹⁶⁾.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해 성과재생산포럼은 2016년에 인구정책, 소수자운동 등과 성과 재생산 권리 논의의 접점을 찾는 연속포럼을 이어갔다. 마침 앞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 사태와 맞물린 시기로 기획되어 공동성명 발표 직후인 10월 25일에 열린 3차 포럼 <‘생명권 VS 선택권’ 판 뒤집기>에서는 150여 명의 방청객이 참석해 강당을 가득 메운 모습을 통해 새로운 논의 틀에 대한 대중적 욕구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¹⁷⁾.

어쩌면 우연했다고 해야 할 사건을 계기로 삼아 (그리고 폴란드의 “검은 시위”와 공명하며) 이런 논의들이 거리의 정치로 결정화되었다. 2016년 10월 15일에는 강남역10번출구, 불꽃페미액션, 페미당당 등의 신생 페미니스트 그룹들이 “나의 자궁 나의 것”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서울에서 집회를 열었다. 두 주 뒤인 29일에는 한편으로는 앞의 신생 그룹들이, 한편으로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위시한 전국 규모 여성단체들이 나란히 이름을 걸고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라는 제목으로 서울에서 집회를 열었고, 이를 전후해 전국 각지에서도 역시 다양한 단

16) 자료집 전문은 <https://wde.or.kr/151022장애여성-재생산권-새로운-패러다임-만들기-토론회-자료집/>에서 받을 수 있다.

17) 이 포럼의 자료집은 <https://wde.or.kr/성과재생산포럼xil과젠더포럼-3차-포럼-생명권-vs-선택권-판-뒤집기/>에서 받을 수 있다.

체·모임들이 공동으로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이어진 집회들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모인 만큼 다양한 —결정권 보장에 대한 요구부터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 폐지나 성교육 보장에 대한 요구에까지 이르는— 말들이 거리를 흔들었다. 2017년에는 2월에 열린 제 9회 성소수자인권포럼의 〈검은색 속 무지개: 성소수자와 재생산권〉 세션, 폐미광장에서 5월에 개최한 포럼 〈낙/태〉 등 토론을 위한 자리들도 마련되었고, 7월에는 성과재생산포럼과 한국여성민우회의 공동 제안으로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체 구성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구성된 것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다. 모낙폐를 공식적으로 발족한 2017년 9월 28일(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기자회견문의 문장들과 함께 당사자들의 이야기도 올려 퍼졌다. 모두가 낙태를 경험한 당사자들이었던 것은 아니다. 남성 파트너의 피임 거부, 성폭행, 성교육의 부족 등으로 뜻하지 않게 임신하게 되어 임신중절을 해야 했던 경험이나 그 과정에서 마주한 사회적 낙인, 비위생적인 의료 시설 이용 등에 대한 경험과 함께 임신을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난 경험, HIV 감염인으로서의 삶,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신출산은 물론 육아의 부담까지도 홀로 져야 하는 삶, 당연하다는 듯 낙태를 권유 받거나 유전 우려를 빌미로 재생산을 금지당하거나 혹은 보조생식기술 이용을 요구 받는 장애여성으로서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다.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당사자가 무대에 올라 뜻하지 않은 임신이 여성으로 정체화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위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¹⁸⁾.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말만

18) 일부는 당사자 자신이, 일부는 당사자들을 대리한 활동가 등이 이야기했다. 다음 기사에서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곽상아, 「여성들이 ‘임신 중단’을 선택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다(화보)」,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7년 9월 28일자 기사. https://www.huffingtonpost.kr/2017/09/28/story_n_18124122.html

으로는 미처 다 드러나지 않는, 성별과 섹슈얼리티, 혼인 여부, 경제적 상황, 장애, 연령, 질병 등 여러 축의 교차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성적 권리 전반을 침해당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운동으로서의 ‘낙태죄 폐지’가 명실상부한 시대의 요구로서 등장한 것이다.

운동은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의 선별적인 ‘허용(한계 확대)’이 아닌 금지법의 폐지를, 그리고 인공유산유도약물을 포함한 보다 안전한 기술에의 접근권, 임신·유산·출산을 넘어서는 의미에서의 재생산 건강, 여러 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의 철폐, 실효성 있는 성교육 등의 보장을, 성평등한 일상의 보장을 말하기 시작했다. “재래에 우리나라에 있던 그 도덕관념”, “새 국민의 풍기”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국가의 성적 통제 자체에 맞서기 시작한 것이다.

2019년 4월 11일,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모낙폐를 비롯한 여러 단체나 모임들에서 거리 집회, 강연회, 토론회, 세미나 등을 이어갔고, 활동가나 의료인, 법조인, 그리고 여러 위치의 당사자들이 언론을 통해서 의견을 냈다. 폴란드, 아일랜드, 아르헨티나 등 해외의 낙태죄 폐지 운동 현장들이나 국제기구들과도 의견과 응원을 주고받았다. 2018년 들어서는 한국의 상황을 직접 다룬 『배틀그라운드』(후마니타스)나 한국의 저자들이 유럽의 활동가들을 인터뷰해 쓴 『유럽낙태여행』(봄알람), 번역서 『낙태에 대한 옹호』(전기가오리), 『국가가 아닌 여성이 결정해야 합니다』(갈라파고스) 등 단행본도 여러 권 출간되었다. 이와 같은 활발한 논의와 함께, 운동의 촉매제가 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

2017년 9월 1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익명 청원이 올라온다. 한 달간 총 235,372명의 연명을 받은 이 청원에 (한

달 안에 20만 명 이상이 연명하면 직접 답한다는 원칙에 따라) 청와대에서는 11월 25일자로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출연한 영상 답변을 게시했다. 여기서 청와대는 2012년 헌법재판소의 2010헌바402 결정이 전제한 ‘생명권 대 자기결정권’ 구도를 답습하는 한편, 혼외출산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논의 가능한 허용 사유로 제시했다. 여전히 처벌과 허락의 구도 속에, 그리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속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결정적으로 청와대는 정부 차원의 입법안 제시를 비롯한 적극적 활동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실태조사 실시 이상을 약속하지 않았다¹⁹⁾. 하지만 답변은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낙태죄 폐지 운동이나 여론 조사 결과 등을 애써 무시해 왔던 정부가 더 이상 회피로 일관하지는 못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낙태에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 처벌 위주 정책이 갖는 문제점을 인정하는 태도 변화를 보였다는 점은 고무적인 사실이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낙태죄 위헌 소원이다. 낙태죄 폐지 요구는 점점 더 커져갔지만, 행정부도 입법부도 아무런 의지를 갖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 2016년 9월 의료관계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던 보건복지부는 반발이 일자 11월에 낙태죄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과 같은 1개월로 되돌린 안을 내고 “비도덕적 의료행위”라는 용어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다음 달인 12월 행정자치부는 오히려 지역별 가임기 여성 수 등을 기재한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공개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²⁰⁾. 그러던 중에 업무상승낙낙태

19) 청원문과 청와대 답변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78>에 게시되어 있다. 이 답변에 대한 보다 상세한 비판으로는 성과재생산포럼의 논평 「‘친절한 청와대’에게 보내는 ‘친절한 논평’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에 부쳐」(<http://srhr.kr/2017/185>)를 참고하라.

20) 담당부서로 항의전화가 쏟아지는 등 큰 반발에 부딪히자 행자부는 곧바로 지도 공개를 중단했다. 얼마 후 박근혜 탄핵, 문재인 대통령 취임 등 정치적 상황의 변화가 있었지만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협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2017년 2월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이 의사는 먼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당해 직접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그해 중순 경 이 건을 알게 된, 최근의 낙태죄 폐지 운동을 비롯해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 온 변호사들은 사건 당사자를 찾아 이를 공익소송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공식적으로 대리인단을 꾸렸다²¹⁾. 낙태죄는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가장 첨예한 사안이 되었고, 누구도 모른 채 할 수 없는 이슈가 되었다.

2018년 5월에 열린 공개변론을 위해 작성된 (앞서 인용한) 법무부의 의견서에서 드러나듯 정부는 나아간 입장을 만들지 못했다. 하지만 “공개변론 전후부터 놀라울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임신과 낙태에 관해서 발언하고 연구자들의 연구와 담론, 재생산권 운동이 선고시까지 폭발적으로 지속”되었고 대리인단의 변론과 함께 “이런 발언과 운동이 헌법재판소의 담장을 넘었”다²²⁾. 2019년 4월 11일, 마침내 형법상 낙태죄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었던 형법 제 269조 1항(여성의 자기낙태죄) 및 제 270조 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은 의사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관 4인의 다수 의견에 따라 2020년 말까지는 현행법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단순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도 3인에 이르렀다, 9명 중 7명이 낙태죄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이다.

2017헌바127 결정문은 낙태죄 문제를 “자기낙태죄 조항의 존재와

2018년에 최종 공포되었다.

21)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변론을 진행한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포함한 글로 대리인단에서 활동한 변호사 차혜령의 「낙태죄 위헌소원 변론기」가 있다(<https://withgonggam.tistory.com/2235>).

22) 앞의 글.

역할을 간과한 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직접적인 충돌을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하는 한편 여성의 임신과 그 유지 및 출산, 혹은 중지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으로서 존중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했던 2012년의 합헌 결정(2010헌바402) 요지를 뒤엎는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결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운동의 힘으로써— 마침내 나온 것이다.

이날 저녁 모낙폐 주최로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집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거리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나선 우리의 행동이 없었다면” 결코 나올 수 없었을, “경제 개발과 인구 관리의 목적을 위해 생명을 선별하고 여성의 몸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 그 책임을 전가하여 왔던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²³⁾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는 집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역사적 전환을 이루어 낸 서로를 축하하고 또 앞으로를 다짐했다. 이들이 나누어 가진 팻말에는 20190411이라는 붉은 숫자 아래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라는 문장이었다.

23) 2019년 4월 12일자 모낙폐 입장문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입장」(<http://srhr.kr/2019/296>).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며칠 후인 4월 15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국회의원 9인이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튿날에는 모낙폐와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등이 낙태 허용 사유 및 시기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개정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러 학회, 연구소, 정당 등에서 향후의 입법 및 정책 관련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들도 이어지고 있다.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를 설계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좁게는 임신과 그 유지 및 출산 혹은 중지의 과정에서 국가가 어떤 권리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겠지만 넓게는 국가가 개개인의 성과 재생산을 어떤 의미로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며, 또한 ‘생명’이라는 말로 축소되어 왔던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다.

4월 11일 오후에 나온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기다리며,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는 많은 이들이 아침부터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가가 지금까지 단순히 낙태라는 개별 행위만을 금지해 온 것이 아니라 청소년,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섹슈얼리티를 억압하고 통제해 왔음을 지적하는, 그런 의미에서 낙태죄 폐지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선언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우리가 만들어 나갈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란 단순히 금지 조항이 사라진 세계가 아니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과 기술에 가격 부담이나 사회적 낙인, 혹은 지역적 장벽이나 언어 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세계, 일련의 과정에 결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세계,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 맺으며 살 수 있는 세계, 더 이상 국가에 의해 섹슈얼리티를 통제당하지 않을 수 있는 세계, 숫자로 치환되는 인구로서 관리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일 것이다.

앞에서 확인했듯 형법 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안위도 임신한 여성의 안위도 아닌 국가 질서의 안위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모자보건법의 허용 한계 조항 역시 당사자들의 건강 보장이 아니라 국가 인구 통제를 위해 만들어졌다. 낙태죄 폐지 운동은 그와 같이 국가를 위해 개개인을 억압해 온 역사를 끝내는 운동, 나아가 포괄적인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운동이었다. 앞으로 이어갈 논의의 초점이 낙태 허용 사유와 시기, 그 과정에서의 상담 의무화 여부 따위와 같은 문제들일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래서다. 지금은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역사에 온전히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점이자, 임신중지는 물론 성관계, 피임, 임신, 임신유지, 출산 및 출생, 출생 등록, 입양, 양육과 성장 등 삶의 전 과정에서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교육, 노동, 보건의료, 복지, 이주, 가족정책 전반에서 새로운 틀을 논의하고 장애나 질병, 연령, 혼인 상태, 이주 여부, 경제 상황 등을 빌미로 자행되어 온 차별과 억압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들을 마련하는 새로운 문장들을 함께 써 나가야 할 시점이다.

형법과 모자보건법은 물론, (피임 등에 대한 포괄적 지원도, 청소년·장애인·이주민 등 소수자에 대한 고려도 없는)의료 정책, (일가정 양립을 내세우면서 역으로 여성에게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전가하는)노동 정책, (추행죄 조항으로써 개인간의 합의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군형법, (생식 기능 제거를 요구하는)성별 정정 관련 대법원 예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는 것 이상의 기능을 하지 않는)가족관계 등록 및 출생 등록, 입양 관련 제도,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데에 초점을 둔)성교육 제도, (전과매개행위금지 조항을 두고 개인에게 책임과 낙인을 돌리는)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등 수많은 장치들에 대한—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를 떠받치며 한편으로는 이에 기생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성차별적이며 가부장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문화에 대한—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간 “낙태죄를 폐지하라”와 함께 외쳤던 구호들을 되새기며 글을 마치기로 하자. “호주제도 폐지했다, 낙태죄도 폐지하자”라고,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라고 외쳐 왔다. 이것은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주의적인 국가에 맞서 이어온 싸움이다. 생명의 존엄함을 운운하며 실제로는 수많은 생명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며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온 국가의 책임을 묻는 싸움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하건대, 낙태죄 폐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금지되었기에 숨겨야 했던 경험을 드디어 거침없이 펼쳐 놓는 일을, 차단 속에서 제한되어 왔던 상상을 드디어 막힘없이 풀어내는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류민희. 2018. “낙태의 범죄화와 가족계획 정책의 그림자.” 성과재생산포럼 기획.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서울: 후마니타스.
- 이유림. 2018. “낙태죄를 정치화하기.” 성과재생산포럼 기획.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서울: 후마니타스.
- 황지성. 2018. “건강한 국가와 우생학적 신체들.” 성과재생산포럼 기획.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서울: 후마니타스.
- 인구정책 50년사 편찬위원회 편. 2016. 『한국 인구정책 50년: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세종: 보건복지부.

2. 토론회 자료집

- 나영정. 2015. “장애여성의 경험과 관점으로 다시 제기하는 재생산권리.” 장애/여성재생산권새로운패러다임만들기기획단 편.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 임만들기 종합토론 자료집』.

3. 성명 및 논평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2017.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와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http://srhr.kr/2017/234>.
- _____. 2019.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http://srhr.kr/2019/265>.
- _____. 2019.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입장.” <http://srhr.kr/2019/296>.
- 성과재생산포럼 외. 2016.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인공임신중절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하고, 형법 상의 ‘낙태죄’를 폐지하라!” <http://srhr.kr/2016/156>.
- 성과재생산포럼. 2017. “‘친절한 청와대’에게 보내는 ‘친절한 논평’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에 부쳐.” <http://srhr.kr/2017/185>.
- 임신출산결정권을위한네트워크. 2010. “임신중지(낙태)권 요구안. ‘낙태한 여

성을 처벌하지 말라.’” http://hotline.or.kr/board_statement/10704.

_____. 2011. “낙태처벌은 명백한 위헌이다! 임신과 출산에 관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라!”

_____. 작성연도불명(2011 게시). “낙태는 태아 생명 권과 산모 선택권의 대립인가요” <https://justice2011.tistory.com/entry/낙태는-태아-생명권과-산모-선택권의-대립인가요>.

3. 국회 회의록

2대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5회 제55차 회의록, 1953년 4월 16일.

2대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16회 제17차 회의록, 1953년 7월 6일.

4.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 2012.8.23. 2010헌바402, 판례집 24-2상, 471 [합헌] (형법 제270조 제1항 ‘낙태죄조항’ 위헌소원).

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 공보 제271호, 479 [헌법불합치]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5. 언론 기사 및 연재

고경심. 2018. “낙태와 여성 건강권(2) - 한국의 낙태 실태.” 《건강미디어》. <http://www.media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7>.

곽상아. 2017. “여성들이 ‘임신 중단’을 선택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다(화보)” 《허핑턴포스트》 https://www.huffingtonpost.kr/2017/09/28/story_n_18124122.html.

6. 기타 웹페이지

차혜령. 2019. “낙태죄 위헌소원 변론기.” <https://withgonggam.tistory.com/2235>.

한국여성민우회. 2016. “여성들의 임신중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낙태죄’ 폐지를 위한 법개정 청원서명.” <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18460>.

홍미영. 2018. “‘적게 낳아 잘 기르자’ 시대의 반강제 불임수술.” <https://blog.naver.com/myhong0910/221283307370>.